

장애영유아 교육·보육 현안 및 요구 - 유보통합을 중심으로 -

권미경

1. 문제제기
 2. 장애영유아 등록 현황
 3. 장애영유아 교육·보육기관 및 자원 현황
 4. 유보통합 시 장애영유아 교육·보육관련 요구
 5. 유보통합 시 장애영유아 교육·보육관련 제언
-

요약

- 현행 이원화된 장애영유아 교육·보육 지원 체계가 지니는 특성을 파악하고, 선행연구 및 현장과 전문가 의견조사를 토대로 유보통합 시 예상되는 어려움과 요구를 구체화함으로써 향후 유보통합 추진 시 장애영유아 관련 정책 마련을 위한 이슈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유보통합의 추진에 대하여 전문가들이 제시한 대표적인 안은 장애영유아 관련 정보에 대한 공시 항목 추가, 통합평가 시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 지표 추가, 결제카드 통합 시 교육보육비용 지원카드에 장애영유아 치료지원과 바우처, 관련서비스 지원까지 하나로 통합, 시설기준으로 면적 및 시설기준의 강화, 자격에 따른 역할의 구분 및 명료화, 보조교사 지원, 대체교사 인력풀의 확보 등으로 의견이 수렴되었으나 교사 양성 및 자격 정비와 관련하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에 대하여 전문가 배경에 따라 견해의 차이를 보임.
- 유보통합 추진 시 장애영유아 관련 정책 마련을 위해 유아교육·보육 관련 정책 개편 시 장애 전문가 포함, 장애영유아 관련 기초 자료의 정리, 정보공시제 개선으로 부모의 정보에 기반한 선택권 보장, 장애영유아 담당교사 자격 및 양성체계 정비, 장애영유아를 위한 행정 전달체계 및 지원체계의 역할 조정 등을 제언함.

1 문제제기

- 성장하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지원은 미래 사회 구성원을 육성하는 주요한 국가 과제 중 하나라는 인식 하에 최근 장애 영유아의 조기 진단, 통합교육에서 나아가 영유아의 주요 환경인 가정과 교육·보육기관을 포함하는 포괄적 지원방안을 구축함이 국제적인 추세임.
- 최근 장애영유아를 중심으로 한 교육·보육 정책의 변화는 과히 괄목할 만한 하나 누리과정의 시행과 유보통합 추진 등 유아교육과 보육정책의 변화가 급속한 상황에서 장애영유아 중심 교육·보육 현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 본 이슈페이퍼는 육아정책연구소 2015년도 일반연구과제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방안 연구(1)(권미경·최효미·최지은·김건희)’의 일부 내용을 재구성한 것임.

- 정부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어떤 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 발전할 수 있는 환경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함으로써 최선의 출발점을 제공하기 위해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추진 중임.
- 장애영유아가 법적인 의무교육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장애영유아의 교육·보육 관련 내용이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현장과 학계를 중심으로 대두되고 있음.
- 장애영유아 정책은 전반적인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의 변화 맥락 속에서 장애영유아의 교육·보육의 기회 확대와 질적 수준의 제고를 위한 선제적 접근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임.
- 이에 본 원고는 현행 이원화된 장애영유아 교육·보육 지원 체계가 지니는 특성을 파악하고, 선행연구 및 현장과 전문가 의견조사를 토대로 유보통합 시 예상되는 어려움과 요구를 구체화함으로써 향후 유보통합 추진 시 장애영유아 관련 정책 마련을 위한 이슈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장애영유아 등록 현황

가. 장애 유형별 등록 장애영유아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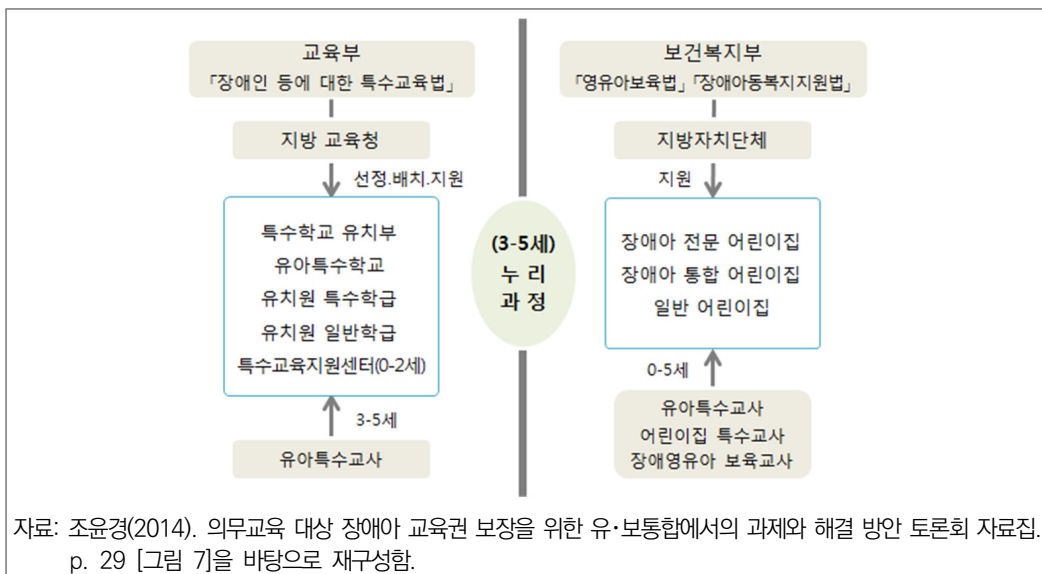
- 2014년 말을 기준으로 통계청에 등록된 장애영유아의 수는 0세 31명, 1세 446명, 2세 1,067명, 3세 1583명, 4세 2,32명, 5세 2,498명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급격한 증가를 보임.
- 등록한 통계는 0~5세 장애영유아의 수가 7,657명으로 나타나나, 진단 중이거나 미등록인 경우를 감안하며 실제 장애를 지닌 영유아의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함. 장애유형별로는 뇌병변(3,040명), 지적장애(1,821명)가 많아서 이 두 가지 장애가 전체 0~5세 장애영유아의 60%를 상회하며 그 다음은 청각장애(860명)의 순으로 나타남.

나. 연령별 등록 장애영유아 수

- 연령별 통계가 생산된 2007년부터 장애영유아 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7년 8,037명이던 등록 장애영유아 수는 2009년 9,516명으로 증가했다가 2013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고 2014년에 다시 소폭 증가함.

3 장애영유아 교육·보육 기관 및 자원 현황

- 장애영유아 교육과 보육지원은 교육부를 중심으로 지방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연결되는 특수학교와 유치원에서의 장애 영유아 유아교육, 그리고 보건복지부, 지자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일반 어린이집으로 연결되는 보육서비스로 이루어짐.



[그림 1] 장애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

가. 장애영유아 교육·보육기관 운영 비교

-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행정 전달체계인 장애영유아 관련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취원·입소 대상과 과정, 교사 대 아동 비율, 교사자격 및 보조인력, 교사인건비 및 각종 지원을 비교하면 다음 <표 1>과 같음.

〈표 1〉 어린이집과 유치원 장애 아동 관련 운영내용과 절차

내용	어린이집	유치원
입소 대상자와 과정 (배치)	-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복지카드, 특수 교육대상자 진단평가결과 통지서등으로 입소 순위에 따라 입소함. - 입소를 희망하는 어린이집에 부모가 보육통합 시스템 이용하여 대기신청	-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 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함.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관련 서비스 범위도 결정함.
교사 대 아동 비율	유아특수교사 혹은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한 명 당 장애아동 3명 배치됨.	유아특수교사 한 명당 장애아동 4명으로 배치됨. 종일반은 별도 교사 배치함.
교사 자격	유아특수교사(장애 아동 6명당 한 명 배치)와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자격교사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순차적 배치함.	유아특수교사(특수교육전공 학사)
보조인력	장애보육도우미 배치(2013년부터 서울시만 해당됨). 장애아 활동보조, 교사 수업준비 보조, 교사보조 업무 등 담당함.	특수교육보조원 배치(2004년부터 시행됨). 교수학습지원, 행동문제 지원, 개인 욕구 지원 담당함.
관련서비스 지원	치료지원(일부)	보조인력과 통합지원 외에 가족지원(부모교육, 상담), 치료지원(물리, 작업, 언어).
관리 감독 및 평가	장애아 보육프로그램의 내용과 그 운영 관리 감독 기관 없음	교육청 담당 장학관 등이 프로그램 내용 운영 관리 감독
특수교사 인건비 지원	교사 인건비의 80%지원(20%는 어린이집 부담함)	교사 인건비 100%지원
유아 1인당 교육비(월)	보육 지원 금액 1인당 연간 보육지원금 1,218,490원	유아특수학교의 경우 1인당 연간 교육비 4,076,573원
교재교구비 지원	학급당 100만원 이하 (지방비)	학급당 300~500만원
통학지원	학부모가 별도 부담함	통학지원 전면 무료, 통학차량지원 및 통학비 지원
특수교사 연봉(5호봉)	2,400,000~2,500,000원	3,100,000~3,300,000원

자료: 조윤경(2014). 의무교육대상 장애아교육권 보장을 위한 유보통합에서의 과제와 해결방안. p.23 〈표 3〉의 내용을 재구성함.

□ 이는 장애영유아가 어느 교육·보육기관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지원의 내용도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하며 유보통합의 추진은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고자 함이며, 장애영유아의 재원 기관과 관계없이 동등한 교육과 보육 질을 유지하고, 부모의 선택의 기회를 확장하려는 것임.

나. 장애영유아 교육·보육기관 자원 현황

- 2014년 기준 교육·보육기관 자원 장애영유아는 16,069명이며, 장애아전문어린이집 36.5%, 장애아통합어린이집 23.9%, 일반어린이집 12.5%, 일반 유치원 일반학급과 특수학급 각 10%, 특수학교 영아반 및 유치부 6.1% 자원 중임.

〈표 2〉 장애영유아 교육·보육 기관 자원 현황

단위: 명, %

구분	교육기관 ¹⁾			보육기관 ²⁾			계
	특수학교 영아반, 유치부	일반 유치원 특수학급	일반 유치원 일반학급	장애아 전문	장애아 통합	일반 어린이집	
인원	978	1,675	1,707	5,860	3,835	2,014	16,069
비율	6.1	10.4	10.6	36.5	23.9	12.5	100.0

주/자료: 1) 교육부(2014). 특수교육 연차보고서(2014년 4월 기준).

2) 보건복지부(2015). 보육통계(2014. 12월말 기준). p. 116, p. 124.

4 유보통합 시 장애영유아 교육·보육 관련 요구

가. 유보통합에 대한 교육·보육 기관 현장 의견

1) 조사 개요

- 2015년 현재 추진 중인 유보통합 과정에서 장애영유아 관련 정책의 위치를 파악하고 유보통합 시 고려되는 문제점과 통합 시 고려해야하는 부분에 대해 장애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의 기관장 500명과 교사 500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함(2015년 7월~8월).

2) 유보통합 과정에서 장애영유아를 위한 우선 고려점

- 장애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을 위해 유보통합의 과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는 부분은 기관장(36.2%)과 교사(40.6%) 모두에서 '교사관련 규정의 정비'임. 기관장의 경우는 '장애영유아 배치체계의 일원화(21.5%)'가, 교사에서는 '교육·보육과정 체계화(20%)'가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표 3〉 유보통합 과정에서 장애영유아를 위한 우선 고려점(기관장, 교사)

단위: %(응답 수)

구분		영유아 배치체계 일원화	교사 관련 규정 정비	교육·보육 과정 체계화	교사 재교육 체제 정비	장애영유아 지원체계 일원화	시설기준 통합	계
전체	기관장	21.5	36.2	13.9	9.8	15.8	2.8	100.0(500)
	교사	17.0	40.6	20	8.2	11.2	3.0	100.0(502)
기관장	유아교육	21.8	38.5	16.4	11.5	9.3	2.5	100.0(250)
	보육	21.2	33.8	11.5	8.1	22.3	3.1	100.0(250)
	$\chi^2(df)$	18.10(5)**						
교사	유아교육	16.2	42.7	19.7	8.7	9.2	3.5	100.0(251)
	보육	17.8	38.5	20.3	7.7	13.1	2.6	100.0(251)
	$\chi^2(df)$	2.95(5)						

** $p < .01$

3) 교사 대 장애영유아 비율

□ 현재 유치원은 장애영유아 4명 당 1인의 특수교사가 어린이집은 장애영유아 3명당 1인의 교사가 배치됨. 유보통합 시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 융통성 있게 결정해야한다는 응답이 기관장 51.2%, 교사 55.4%로 가장 많음.

〈표 4〉 유보통합 이후 적정 교사 대 장애영유아 비율(기관장, 교사)

단위: %(응답 수)

구분		1:3	1:4	1:2	장애 유형·정도에 따라 달리해야 함	계
전체	기관장	17.7	6.1	25.0	51.2	100.0(500)
	교사	14.5	4.4	25.7	55.4	100.0(502)
기관장	유아교육	17.0	11.9	16.7	54.3	100.0(250)
	보육	18.3	0.2	33.4	48.1	100.0(250)
	$\chi^2(df)$	43.13(3)***				
교사	유아교육	15.3	8.9	17.8	58.0	100.0(251)
	보육	13.6	0.0	33.5	52.9	100.0(251)
	$\chi^2(df)$	35.42(3)***				

*** $p < .001$.

□ 교사 대 장애영유아의 비율을 1:2로 하자는 응답 비율이 기관장(33.4%)과 교사(33.5%) 모두에서 유아교육기관(기관장, 16.7%; 교사 17.8%)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임은 보육기관의 현재 기준이 1:3이므로 현재보다 상향 조정에 대한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여겨짐.

나. 유보통합에 대한 전문가 의견

- 장애영유아 관련 학회의 추천을 통해, 교육과 보육 전공을 고려하여 학계 전문가 20인과 현장 전문가 6인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서면 자문을 요청하였고, 9월 5일~10월 7일까지 최종 응답한 학계 전문가 14인과 현장 전문가인 장애영유아 재원기관 기관장 2인 의견임.

1) 유보통합 추진 시 장애영유아 관련 정책 수립 시 주안점

- 장애영유아 관련 정책의 중심을 부모가 아닌 장애영유아에 두어야 함.
- 통합과정은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보육의 질적 수준 담보에 주목해야함.
- 유보통합 시 특수교육, 장애아 보육의 전문성 확보에 노력해야함.
- 장애 영아와 유아에 대해서는 차별적 접근이 요구됨.
- 장애는 영유아의 성별과 연령처럼 단순히 구분짓기 어렵다는 특성을 지니므로 개별화 교육지원에 대한 부분을 통합 시 반영해야 함.
- 추진과정의 고려점은 다음과 같이 수렴됨.
 - 유보통합 과정에서 장애영유아 관련 실무자의 참여가 필수적임.
 - 통합을 위한 준비기간을 확보해야 함.
 - 유보통합의 추진과정에서 국가수준에서의 장애영유아 교육 내용 및 자료의 개발과 관리가 필요함.
 - 장애영유아 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
 - 유보통합을 통해 장애영유아 담당 기관 간 연계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

2) 유보통합 추진 요소별 고려점

가) 정보공시 확대·연계 및 통합

(1) 유보통합추진 내용

- 유치원의 경우는 유치원 알리미, 어린이집은 아이사랑포털을 통해 기관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고 있으나, 서로 다른 공시내용과 공시 사이트 분리로 상호비교에 한계가 있었음.

□ 통합의 과정으로 공시항목 중 공통항목을 추출하여 유치원·어린이집의 상호 비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사용자 요구 등을 기초로 통합공시 항목 개발, 통합공시 항목을 구성 운영 중임.

□ 2015년 현재 통합정보공시가 가능한 항목은 기본 현황(기관명, 설립유형, 주소 및 연락처, 위치정보), 영유아(연령별 학급수, 정·현원), 교직원(교직원 현황), 교육·보육과정(1일 운영시간, 누리과정 운영, 제공서비스), 교육·보육비용(정부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 기타(통학용 차량운영) 등이다.¹⁾

(2) 장애영유아를 위한 고려점

□ 장애교육·보육관련 내용 공시 항목을 확대하여야 하나, 장애영유아 관련 정보는 제한적으로 하자는 것으로 추가 공시가 필요함.

〈표 5〉 장애영유아 관련 추가 공시 필요 항목

장애영유아 관련 추가 공시 필요 항목
• 특수교육 교육형태 제시: 통합(완전통합/부분통합) 또는 특수반 분리 운영 여부 • 장애영유아 재원 유·무 • 장애영유아 담당 교사 현황: 인원수, 교사자격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조 인력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유무: 유형, 종류 • 장애영유아에게 제공되는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 치료지원, 방과후학교, 특수교육 보조원 배치 등

나) 평가체계 연계·통합

(1) 유보통합추진 내용

□ 유치원, 어린이집 각기 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평가체계, 결과공개 범위 등이 차이가 있음. 이에 동일한 기준과 방법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평가하는 평가체계 구축을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주기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 중임.²⁾

1) 국무조정실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보도자료(2014. 11. 17). '우리집 주변의 어린이집·유치원 정보, 한곳에서 찾아보세요!' p.7 참고함.

2) 국무조정실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보도자료(2014. 12. 16). '유치원·어린이집 평가 등급 공개로 학부모 선택권 확대!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p.1

(2) 장애영유아를 위한 고려점

- 어린이집 평가인증(2차)의 경우 장애전문어린이집은 평가인증 지표를 별도 구성하여 평가하였고, 장애통합어린이집은 관련 지표가 없었음. 기존의 장애영유아 관련 평가기준은 물리적 환경에 대한 지표 위주이기 때문에 평가를 위한 질적 지표 개발에 대한 요구도 높았음.
- 통합평가에 장애영유아 교육보육 현황을 점검할 수 있는 관련 평가지표가 추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룸.

〈표 6〉 통합평가체계 관련 의견

통합평가체계 관련 의견
• 장애영유아가 포함된 경우 교실 내에서의 실질적인 교육활동이나, 교사-유아, 유아 간 사회적 상호작용의 질과 같은 사회적 환경과 인적환경에 대한 지표 추가 • 물리적 환경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의 수정, 상호작용 포함 • 질 평가하기 위해서는 ECERS, ICP 지표 등 실행과정에 기반 한 질적 지표 개발 • 장애통합어린이집과 장애전문어린이집 각각의 특성에 맞는 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주기 필요 (현재는 장애전문어린이집만 평가지표가 있음) • 장애영유아를 위한 특별한 조치(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등) • 장애영유아 물리적 환경 및 편의시설유무 평가 자료 • 장애영유아 교육과정 운영(장애유아 교육과정의 수정절차 및 내용) • 장애통합교육·통합보육에 필요한 항목을 추가·삽입 (협력교수, 협동학습, 수업계획서에 장애유아 참여방법을 위한 조치사항 등) • 장애이해교육제공여부, 일반교사들의 장애이해 혹은 특수교육 관련 연수 이수여부 • 교사협력을 위한 연수와 교사협력체계 실행여부 • 평가수행 시 장애통합에 대한 유경험자가 관찰자로 참여 • 평가지표 관련 문서 간소화 • 평가 시 장애아 부모의 평가가 포함되어야 함.

다) 재무회계규칙 강화·통합

(1) 유보통합추진 내용

- 유치원·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관련 통합은 관리부처·재원, 시설기준, 규제수준 등의 통합 경과를 고려하여 공통재무회계규칙을 마련하고자 함. 실행을 위한 실무 매뉴얼 제작배포 및 연수 실시, 지도점검 강화를 포함.

(2) 장애영유아를 위한 고려점

- 유보통합 시 개발한 공통재무회계규칙과 동일하게 적용하자는 의견임. 이와 더불어 장애영유아 교육·보육 시 재무회계 운영을 위해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은 다음 <표 7>의 내용과 같음.

<표 7> 재무회계규칙 관련 의견

재무회계규칙 관련 의견
• 통합 시 재무회계 규칙 강화 규정 동일 적용 • 현재의 재무규칙이 일반 아동 1인당 기준으로 지출 기준이 되어 있음. 장애영유아의 경우 별도의 지출 기준 마련이 필요함. •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교육을 위한 특별재무회계 포함 • 장애통합교육 실행에 필요한 재무회계를 포함 • 통합재원, 통합관리감독 필요: 장애영유아에게 책정된 예산이 적절히 사용되었는지 공통 경비로 일반유아에게 함께 사용되었는지의 문제

라) 결제카드 통합

(1) 유보통합추진 내용

- 유아학비와 보육료의 정부 지원금 결제카드가 이원화되어 있었으나 아이즐거운카드의 인증기능과 아이사랑카드의 바우처 결제 기능이 같이 탑재된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 통합카드 ‘아이행복카드’로 일원화함³⁾.

(2) 장애영유아를 위한 고려점

- 유보통합 시 결정된 사항에 따라 그대로 준용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나 이와 더불어 장애영유아를 위해 치료지원비, 방과후학교 지원비, 바우처 등을 하나의 카드로 통합할 필요가 제기됨.

<표 8> 결제카드 통합 관련 의견

결제카드 통합 관련 의견
• 통합 시 결제카드 일원화 방안 동일 적용: 장애 영유아 관련해 특별한 의견 없음 • 치료지원비, 방과후학교 지원비, 바우처 등을 통합하여 하나의 카드로 통합 • 지역사회에서 장애영유아가 다양한 치료와 연계되도록 고려 • 특수교육대상유아가 관련서비스(언어치료, 물리치료 등)를 받을 수 있는 복지카드와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부모에게 편리할 것

3) 국무조정실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보도자료(2014. 8. 29). ‘정부,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결제카드 하나로 통합한다.’ p.3

마) 운영시간 조정

(1) 유보통합추진 내용

- 유치원은 누리과정(5시간)+방과후과정(3~5시간), 어린이집은 정규보육 12시간(7시30분~19시30분)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상이한 운영시간 등으로 인해 학부모의 이용이 불편함이 있음. 이에 운영시간 합리화를 위해 적정 기본 운영시간을 설정하고, 다양한 시간 연장형 서비스를 도입하고 이와 병행하여 재정지원 방식도 연계하여 다양화하고자 함.

(2) 장애영유아를 위한 고려점

- 유보통합 시 결정 내용에 준하여 장애영유아를 위한 운영시간도 고려됨이 적절하다는 의견과 함께 장애영유아 특성을 반영하여 융통성 있는 이용을 허용하고 부모에게 안내함이 필요하다는 의견, 정규과정 이후 교사배치에 대한 기준 마련 등에 대한 요구가 높음.

〈표 9〉 운영시간 조정 관련 의견

운영시간 조정 관련 의견
• 유보통합 내용 범위에서 운영 • 장애영유아의 경우 외부치료 등 타 기관 서비스를 받고 오후 등원하거나 불규칙한 등원(예, 주 3회)등의 요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정 기본 운영시간과 장애영유아 출석 관련 부분에 대한 부모이해와 안내, 규정 등이 필요 • 통합교육과정은 특수교사 주도 협력교사로 운영, 연장서비스는 보육중심으로 운영(운영시간이 연장될 경우 보육교사가 장애유아를 담당하도록 함) • 방과후 과정에 맡겨지는 특수교육대상 유아를 위한 교사의 배치 필요 • 장애 영유아의 교육기관 이용 시간도 어머니의 맞벌이 여부에 따라 시간 차등화 • 추가 보육이 필요한 경우 추가 인력이 배치되어야 함: 교사는 '특수교육법'에 따라 개별화교육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작성하므로 교육 계획 등의 시간이 필요함. • 일률적으로 모든 기관에서 동일한 시간을 운영하기보다는 각 기관의 상황, 지역사회 특성, 학부모의 요구를 분석하여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는 시스템 필요

바) 0~2세 유치원 취원 허용 및 교육·보육과정 통합

(1) 유보통합추진 내용

- 유치원 취원 연령을 현행 3~5세에서 0~2세의 취원을 허용하고 취원 연령 확대에 따른 교육과정 정비를 그 내용으로 함.⁴⁾

(2) 장애영유아를 위한 고려점

- 이미 장애영유아의 경우는 법적으로 0~2세를 교육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음. 공통과정을 준용위해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사용 지침서 개발 필요함.
- 특히 영아의 특성이 다름을 고려하여 의료기관과의 연계, 교사 재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 부모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 차별적 지원이 필요함. 또한 영아를 위해서는 가정 중심 지원 강화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표 10〉 0~2세 유치원 취원 허용 및 교육·보육과정 통합 관련 의견

0~2세 유치원 취원 허용 및 교육·보육과정 통합 관련 의견	
취원 허용	•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은 0세부터임. • 0~2세 취원 허용하되 발달지원을 위한 치료와 연계된 교육적 조기개입 필요. • 현행 유치원은 만3세부터 취원 할 수 있어 장애영아의 배치 기관이 한정적임. 유치원의 취원 연령을 하향 조정되면 장애영아 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음.
교육 보육 과정	• 특수교육 유치원과정의 경우 "누리과정"을 활용하나, 통합교육 상황이나 장애영유아의 개별지도 상황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조정이 필요하므로, 교사용 지침서가 개발되어야 함. • 통합된 장애영아를 위한 교사용 보육과정 지도 자료집을 국가에서 보급
장애 영아 관련 의견	• 장애영아에 대해서는 부모 역량강화 방안에 대한 중점 지원이 필요함. • 0~2세에는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하고, 모자교육 형태로 운영하는 등 유아나 학령기와 같은 교육과정의 틀보다 유연하게 운영 허용 • 0~2세 장애 영아의 경우 외국의 사례를 볼 때, 기관보다는 가정에 있고 장애 관련 전문가가 초학 제적 접근에 따라 가정방문 지원하는 것이 주요 유형임. • 장애 영아 교육과 보육의 경우 현재 법과 지침에 따라서 무상이나 물리, 작업, 언어 치료 등의 기타 서비스의 경우 현재 유료임. 발달재활지원서비스 바우처에서 지원하고 지원을 초과하는 초과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액을 심사하는 제도가 필요함(외국의 경우 정부에서 심사 평가액을 정해주고, 그 이상의 비용을 사용하는 경우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함).

사) 가격규제 제도 개선

(1) 유보통합추진 내용

- 기관유형에 따른 상이한 가격규제(상한제 對 자율제)로 인해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부담금에 차이가 큼. 사립유치원 원비의 과도한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인상률 상한제 등 합리적 가격규제 및 제도적 차이 개선 위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함.

4) 국무조정실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보도자료(2015. 9. 2). '어린이집 미설치지역에 0~2세 유치원 취원, '16년 시범사업 후 단계적 실시 신규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실, 정보설비 등 설치의무화' p. 2.

(2) 장애영유아를 위한 고려점

- 가격규제 부분에서는 장애영유아에 대한 기본 교육비용이 무상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임. 그러나 사립유치원 이용 시 비용에 대한 지원요구와 치료 지원서비스에 대한 기준마련, 서비스 이용 위한 바우처 사용 어려움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표 11〉 가격규제 제도 개선 관련 의견

가격규제 제도 개선 관련 의견
• 원비 관련 장애 영유아의 기본적인 교육비는 무상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 없음 • 가격 산출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마련이 필요. •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교육비는 무상으로 지원되어야 함. 사립유치원이라도 장애영유아 전액 무상교육 실시 • 민간에게 위탁한 공교육 체계로 전환하고 합리적 학부모 부담의무 • 사립유치원 원비 뿐 아니라 언어치료와 재활치료 등 관련서비스 이용비용에 대한 기준 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바우처를 활용한 공적인 서비스의 수요에 비해 공급과 전문 인력의 부족이 심각한 상태로 통합기관에서 관련서비스를 함께 제공하여 부모 재정 부담 경감

아) 시설기준 정비 등

(1) 유보통합추진 내용

- 유치원, 어린이집 등 시설유형에 따른 시설·운영기준이 상이하여 통합 시 기준의 정비가 필요함. 특히 유치원의 경우 건물 총면적만 규정하고 영유아 발달에 필요한 필수 시설기준을 두고 있지 않으며, 교사 대 아동비율을 시·도 교육감 재량에 맡겨 지역 간 편차가 있음. 신규시설에 대해 공통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보완하는 방향을 고려함.

(2) 장애영유아를 위한 고려점

- 장애영유아를 위한 시설기준 강화에 대한 의견은 면적의 확보와 시설설비 기준 강화로 수렴됨. 특히 신규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많음. 사립유치원에서의 장애영유아를 위한 학급의 설치와 지원이 필요함.

- 교사 대 아동 비율은 영아의 경우 1:2, 유아의 경우 1:3이 바람직함. 필요 시 보조 인력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장애의 특성을 반영하여 교사 배치에의 융통성이 있어야함.

〈표 12〉 시설기준 정비 관련 의견

시설기준 정비 관련 의견	
시설기준	• 물리적 환경(예, 접근성) 점검에 대한 내용이 고려되어야 함. • 노후 건축물의 경우, 장애유아의 이동 및 편의시설 설치가 제한적임. •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Barrier-Free, Universal Design의 원칙을 적용하여, 어떤 유형의 장애영유아가 교육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물리적 장벽으로 인한 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설계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함. • 사립유치원에 특수학급 설치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함.
교사대 아동비율	• 현재 어린이집 종일반 기준 교사 대 장애아동 1:3이고, 2개반 이상 경우 서울시에 한해서 장애아보육도우미 배치, 3개반마다 치료사 1인이 배치되고 있음. • 장애영유아의 특성, 장애 정도에 따라 교사 대 아동비율(1:3)의 융통성 부여 • 통합학급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반아동과 특수교육대상유아의 비율은 특수교육대상유아가 학급 인원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장애 영유아의 경우 미국 헤드스타트 등도 통합의 경우 정원의 10% 내외로 정원을 규정하고 있음). • 일반 유아교사와 특수교사가 한 반을 공동으로 맡는 학급 경영체제로 운영됨이 바람직함.

(자) 보육·교육 지원방식 다양화

(1) 유보통합추진 내용

- 재정지원 교육·보육 시간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에 상이함(어린이집 12시간, 유치원 5시간). 양육수당과 보육료의 차이, 시설보육·가정양육 간 양자택일적 지원체계 등으로 시설보육에 대한 과다 수요로 취업모가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는 현황임. 이에 유보통합 시 운영시간 조정 등과 연계하여 합리적인 재정지원 교육·보육시간 기준 마련하고자 함.

(2) 장애영유아를 위한 고려점

- 특수교육 대상 유아, 장애영유아는 의무교육으로 이 문제와는 관련 없음.
- 장애 자녀를 둔 취업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장시간 보육이 이루어지는 경우 방과 후 교사를 배치해야함. 비장애 형제자매에 대한 입소 가능하도록 배려가 필요하며, 가족지원 강화에 대한 요구도 있음.

〈표 13〉 보육·교육지원방식 다양화 관련 의견

보육·교육지원방식 다양화 관련 의견
•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의무교육이므로 이 문제와는 관련이 없음 • 장애영유아 취업모에 대한 우대 방안 마련: 보육시간, 인적 지원 • 어린이집의 종일제 이용 장애영유아의 경우 유치원과 같이 방과후 교사가 오후에는 보육하는 것이 필요함. • 장애유아(맞벌이 가정)의 경우 어린이집에 10시 간 이상 머무는 경우(시간 연장) 가 있어 교사들의 신체적 심리적 소진뿐만 아니라 장애유아의 교육에 있어서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하므로 장애유아를 담당하는 방과 후 교사 배치의 필요 • 시간제 보육은 지정된 기관에 한해서 별도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함. • 취업모 서류 위조(입학 시 우선순위 배정)에 대한 방지 대책 필요함. 현재와 같이 재직 증명서 제출 방식이 아니고 4대 보험 중 건강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인정함. • 장애영유아 형제의 입소우대 • 장애영유아 부모의 경우 취업과 관련 없이 우선 지원 • 장애영유아 부모 중에는 양육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전일제의 무상보육서비스를 택하는 경우가 많음. 부모/양육자들의 장애영유아에 대한 양육효능감을 높이고 부모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가족 지원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차) 교사 양성·자격 정비 및 연계

(1) 유보통합추진 내용

- ☐ 유보통합의 과정에서 NCS(국가직무능력표준)등과 연계한 직무분석을 통해 양성체제 및 자격취득 요건 정비하고, 기존 유치원·보육 교사의 보수교육, 자격시험 등을 통한 타 자격증 취득 및 연계 방안을 검토함.

(2) 장애영유아를 위한 고려점

- ☐ 장애영유아의 교육을 담당할 교사의 자격증 취득 문제와 보수체계, 승진 문제에 관련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함. 기본적으로 교사 양성은 4년제를 기반으로 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임. 교육 또는 보육의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유자격 교사를 경쟁 선발하고, 국가가 관리하자는 의견과 신규 교사양성과정의 강화, 기존인력에 대한 자격갱신의 기회 마련, 온라인 과정 이수자 구분, 보육교사 교육 시 장애관련과목 의무 이수 등에 대한 의견과 교사자격에 따른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음.
- ☐ 그러나 조사대상 전문가의 배경에 따라 유아특수교육, 유치원인지 또는 보육이나, 어린이집인지에 따라 이견을 보임.

〈표 14〉 교사 양성·자격 정비 및 연계 관련 의견

교사 양성·자격 정비 및 연계 관련 의견

- 교사 자격기준 재검토하되, 기존 4년제 특수교육교원(유치원) 자격을 기준으로 함.
- 자격 취득 경로 마련은 기존 4년제 교사양성제도의 틀과 범위를 기준으로 함.
- 신규와 기존 인력을 구분하여 접근하는 방안으로 기존 교사의 경우 별도 교육 체제를 마련하여 신규교사의 질과 동일한 내용을 확보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장애영유아를 위한 전문적인 양성과정과 인원 확대
- 온라인 자격 취득한 자(사이버, 학점은행제)와 대학졸업자에 대한 구별이 필요함.
- 대학 학제개편: 3년제(장애영유아보육과), 4년제(유아특수교육과)등 관련학과 통합
- 교사양성 과정 중 장애아 혹은 특수교육 개론 과목 필수 이수 적용 필요
- 부처통합이후 교사자격 양성체계 동일화
- 취득 경로는 다양화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함.
- 일반 영유아 담당 교사의 경우 자격증에 따라 유치원교사(누리과정 시행), 보육교사(추가 종일반 시행) 등으로 자격증에 따른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필요함.
- 어린이집의 경우 유사유아특수교사(보건복지부 인정 자격증)가 주로 배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통합 시 자격 정비가 필요함.

카) 교사 처우격차 해소

(1) 유보통합추진 내용

-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통과정인 누리과정 시행으로 교사의 직무가 유사함에도 정부 지원액 등 차이로 인해 교사 간 처우에 격차가 있음.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간 불합리한 보수 격차 해소 방안을 마련하되, 실제 보수차이·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어린이집 교사 근무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어린이집 운영시간 조정과 연계함.

(2) 장애영유아를 위한 고려점

- 보수의 차이는 자격 차이에서 비롯됨으로 교사자격 정비가 우선되어야 함. 유아특수교사의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이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이나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근무 기회와 높은 이직률을 보이는 것은 이에 기인함.
- 유아특수교사와 보육교사의 역할 명료화, 호봉 차이를 통한 처우 제공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교사 배치는 장애아 담당교사의 경우 국가가 임용하자는 의견, 통합보육 상황에서 보조교사의 지원, 장애담당교사 대체교사인력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표 15〉 교사 처우격차 해소 관련 의견

교사 처우격차 해소 관련 의견	
교사처우	• 교사의 처우는 자격조건에 따라 달라져야 함. • 교사 근무시간과 보수 체계 일원화 필요 • 유아특수교사에 대한 보수는 현행 기준으로 실시해도 무방할 것 같음. • 장애영유아 통합일반교사와 기관장에 대한 지원도 고려되어야 함. • 특수교사, 장애아 보육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필요(자격 수당) • 유치원과 어린이집 경력 상호 인정(현재는 서로간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음). • 어린이집의 교사처우개선을 통한 교사의 질적 담보 확보
배치 및 인력지원	• 국가차원에서 보육교사 임용 실시 및 관리 • 장애유아 담당 교사 배치 기준의 일원화 • '장애아동복지법'상 어린이집 통합반이 2반 경우 특수교사가 1명씩 배치됨 • 교사 근무 시간의 초과 상한 시간을 주고, 시간외 근무 수당으로 해결이 안되는 경우 업무 초과에 따른 추가 인력 수급 대책이 필요함. • 장애영유아 담당 대체 교사 인력 지원이 필요함. • 유아특수교사는 일정시간 교육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종일제 보육교사가 장애유아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함.

파) 관리부처 및 재원 등 통합

(1) 유보통합추진 내용

- ☐ 유치원, 어린이집의 서비스전달체계, 재원, 법률 등 관리체계의 이원화로 행정적 비효율성이 생긴다는 문제 인식 아래 영유아의 교육·보육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통합방안을 모색 중임. 이는 주무부처 일원화와 연계하여 재원통합과 그 법적 기초가 될 통합법률 제정까지를 포함함.

(2) 장애영유아를 위한 고려점

- ☐ 유보통합 과정에서 장애영유아 관련 교육보육 현황을 고려한 전달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임. 또 일부 의견으로는 아예 장애영유아의 교육보육을 전담할 전달체계가 마련될 필요도 제시됨.
- ☐ 법적 기초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장애영유아가 배제되어서는 안 되며, 유사한 장애영유아 관련법령의 정비가 필요함.

〈표 16〉 관리부처 및 자원 등 통합 관련 의견

관리부처 및 자원 등 통합 관련 의견	
관리부처	- 출생~만 5세까지 모든 영유아와 가족을 지원하는 통합부처와 재정지원 필요 - 특수교육대상 유아 교육 및 보육 서비스가 일반 체제에 잘 통합되어야함. 일반교육·보육 서비스 전달체계 속에서 통합교육 전달체계구축 방안 마련 - 장애영유아 관련 전문 담당 전달체계 필요 - 유치원, 어린이집, 특수교육을 하나의 중앙부처에서 관할하고 산하기관에서 구분하여 관리하는 체제 마련 (총괄기관을 중심으로 관리기관 감독)
자원 · 법률	- 장애 영유아의 법적 근거는 관련 교육부의 '특수교육법'과 보건복지부의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등이 해당됨. -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교육, 통합교육을 위한 재원이 기존 시스템 속에서 자리 잡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통합된 법률에 장애영유아에 대한 예외 적용 문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유사한 장애영유아 관련 법령에 대한 정비(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등) -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현실과 동떨어진 법령에 대한 수정 보완이 필요

5 유보통합 시 장애영유아 교육·보육 관련 제언

가. 유아교육·보육 관련 정책 개편 시 장애 전문가 포함

- ☐ 이제까지 교육·보육과정으로의 누리과정의 내용이라든지, 평가인증 등 평가체계의 구성 등 최근 정책 변화의 과정에서도 장애 영유아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였다는 것이 현장의 지배적인 의견임.
- ☐ 장애 영유아의 정책이 전체 영유아 관련 정책의 흐름 속에서 장애 영유아의 교육·보육 상황을 최적화하면서 조화롭게 마련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의 준비와 구성 과정에서 장애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임을 제언함.

나. 장애영유아 관련 기초 자료 정리

- ☐ 교육과 보육으로 이원화 된 상황은 입소(배치), 교사 대 아동의 비율, 교사의 자격과 처우, 보조 인력의 지원 등에서 차이를 초래하여, 유보통합 시 참고하기 위한 관련 현황에 대한 기초 자료의 구성과 검토가 필요함.
- ☐ 유보통합에서 장애 영유아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통합 방안을 중심으로 장애 영유아의 교육·보육 관련 현황 자료 수합과 통계자료 구축이 무엇보다 먼저 요구되는 상황임.

- 이를 위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애 영유아 교육·보육담당자와 장애 영유아 관련 학계 전문가(유아특수교육, 장애 영유아 보육, 보육, 유아교육)와의 협업을 통한 ‘장애 영유아 현황 자료 분석’ 추진을 제언함.

다. 정보공시제 개선으로 부모의 정보에 기반한 선택권 보장

- 장애 영유아의 부모는 자녀의 장애가 의심되는 순간부터 정보에 목말라 장애 특성에 대해, 장애 영유아의 유아교육·보육 기관에 대해, 장애 치료기관에 대해, 이용 가능한 혜택 등 정보에 대한 요구가 높음.
- 본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정보의 출처는 인터넷이나 ‘입소문’으로 칭하는 지인, 이웃 등에 주로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정보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음이 문제임. 이러한 문제의 개선을 위해 객관적이고 공적인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접점을 넓히는 노력이 요구됨.
- 이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정보공시에 장애와 관련한 정보 내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공시된 정보로 인해 일반 유아 부모의 특정기관 기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있는 상황이므로 부모, 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적 정보 공개의 적정 범위 설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정보공시제 개선을 통해 부모에게 객관적 정보에 입각하여 자녀의 상황에 맞는 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라. 장애영유아 담당교사 자격 및 양성체계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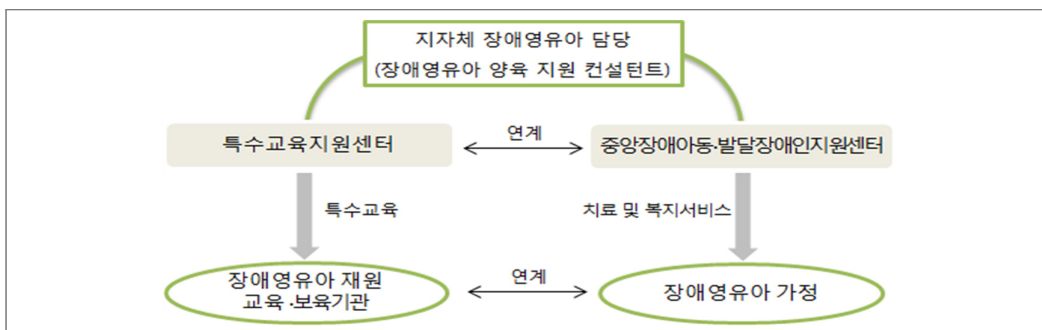
- 장애영유아 담당교사의 역량은 교육·보육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으로 자격 및 양성 체계, 보수교육을 통한 교사 질 관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함.
- 교사의 자격과 배치, 처우 등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유치원에는 장애 영유아를 위한 유아특수교사만 배치되는 반면, 어린이집의 경우는 유아특수교사, 어린이집 특수교사, 장애 영유아보육교사, 40시간 직무연수를 받은 일반 보육교사 등 다양한 자격의 교사가 장애 영유아를 담당하는 상황임.
- 특히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어린이집 특수교사(보건복지부 장관 인정 특수교사)의 전문성 담보의 문제와 그 배치에 대해 유아특수교육학과와 영유아보육학과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임. 부모의 경우 장애 담당교사가 배치된 전일제 통합을 희망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장애아 담당교사의 확충이 선제적 요소로 대두되었고, 장애아 담당교사를 일정 기간의 교육 이수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특수교사로 한시적으로 인정함은 이런 배경에서 비롯된 것임.

- 유보통합 과정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자격 및 양성체계의 개편은 유아교육과 보육 현장에서 교사와 원장 모두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관심 있는 부분임. 이원화된 상황에서 교사의 자격에 대한 기준과 양성과정에서의 격차를 확인하였고, 장애 영유아 담당 교사의 자격 및 양성체계 개편에 대한 별도의 정책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함.

마. 장애 영유아를 위한 행정 전달체계 및 지원체계의 역할 조정

-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된 장애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에 대한 행정 전달체계도 유보통합에 따라 조정이 이루어질 것임. 이에 따라 장애 영유아를 위한 행정 전달체계 및 지원체계의 역할 조정이 필요한 시점임.
- 그와 더불어 장애 영유아 관련 교육·보육 현황을 고려한 지원체계인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함.
- 이에 본 고에서는 장애 영유아의 육아지원의 관점에서 교육·보육기관 지원의 기능과 가정 지원의 기능을 전문화하는 방안을 제안함. 즉,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장애 영유아의 교육 지원의 전문성을 살려 교육보육기관 중심의 지원체계로 기능을 강화하고,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는 부모지원을 포함하여 장애 영유아 가정의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기능으로 전문화하고 또 지원기관 간의 연결통로를 마련하자는 안임.
- 장애 영유아의 부모가 지자체에 요청하면, ‘장애 영유아 양육 지원 컨설팅’의 안내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한 진단, 교육·보육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와 배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다면적인 가족 중심지원이 연결되는 형태임.



[그림 2] 장애영유아를 위한 행정 전달체계 및 지원체계의 역할 조정안

● ● ● 참고문헌

- 교육부(2014). 특수교육 연차보고서(2014년 4월 기준).
- 국무조정실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보도자료(2014. 8. 29). ‘정부,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결제카드 하나로 통합한다.’ p.3
- 국무조정실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보도자료(2014. 12. 16). ‘유치원·어린이집 평가 등급 공개로 학부모 선택권 확대! 우수기관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 국무조정실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보도자료(2015. 9. 2). ‘어린이집 미설치지역에 0~2세 유치원 취원, ‘16년 시범사업 후 단계적 실시 신규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실, 경비설비 등 설치의무화’ p. 2.
- 권미경·최효미·최지은·김건희(2015).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방안 연구(I) - 장애영유아 육아지원 실태 및 지원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연구과제 2015-31.
- 보건복지부(2014). 보육통계(2013년 12월말 기준)
- 조윤경(2014). 의무교육 대상 장애아 교육권 보장을 위한 유·보통합에서의 과제와 해결 방안 토론회 자료집.